

주제: 사회보장에 대한 이해

1. 개념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같은가? 다른가?

어느 것이 상의 개념인가?

1)같은가? 다른가?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문가, 국가 또는 지역사회 등 어떤 타자(다른 사람)가 대상자 즉 욕구를 가진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대상자(들)을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 욕구는 인생살이에서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욕구가 사회복지 개입의 궁극적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보편적 욕구에 관하여 사회복지의 그 가운데서 의식주 및 기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크다. 사회복지의 대상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 국한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생활수준의 개인별, 세대별 격차가 상존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 또는 사회에 의한 욕구 충족의 수준은 대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간적 기본적 욕구의 충족 수준에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보장은 사회복지와는 달리 (산업)사회에서 누구에게나 개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회적 개입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과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같은 가? 다른가?

(이준영 26-27)

사회적 안전망은 1997년 우리나라가 구제금융 시대에 들어간 이후에 나타난 용어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를 대신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나 세계은행에 관련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사회보장이란 용어보다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안전망은 흔히 사회보장 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이준영, 26면)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은 과거 1990년대 초 동구권의 공산국가들이 붕괴되고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발생된 대규모 실업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MF 등의 국제기구가 제안했던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사회복지적 조치들을 의미하는 용어로부터 유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가 구제금융에 대한 조건으로 경제적 구조조정과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요청받게 되면서 이 개념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IMF가 요구하는 사회적 안전망은 일시적이고 잔여적인 성격의 것으로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성격을 지닌 사회보장과는 결코 혼돈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주요 관심사(28면)

- 1) 사회적 개입 또는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
- 2) 개입을 해야하는 제 3자(개입의 주체)는 누구인가?
- 3) 개입방법과 범위?

1)필요성

질병, 출산, 노령, 실업, 산업재해, 사망, 장애, 가족부양 등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또 일단 이러한 위험(들)이 실현되게 되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어 정상적이고 안정된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연대와 위험 분산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가 개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위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2) 개입의 주체

이웃, 친척이나 친지, 지역사회나 종교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일부 저개발 국가의 경우처럼 국가가 충분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연합 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연합 산하 기구들이나 국제 민간 복지단체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3) 개입의 방법과 범위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다. 또한 개입의 범위도 나라에 따라 넓거나 좁아 이에 따라 사회보장의 정의도 광의와 협의의 사회보장으로 귀결된다.

이 준영(37면)

한국에서의 사회보장의 영역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사회보장의 정의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들을 총괄하여 정의하는 인상이 짙다.

헌법 제 34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복지,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통념상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준영에 따르면 “헌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소득보장으로 이해하고, ‘사회복지’는 소득보장이 아닌 비금전적인 서비스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수긍되는 점이 많다.

<<사회보장 기본법>>(1995) 제 3조에는 사회보장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광의의 사회보장을 의미하며 이는 협의로 사용하는 헌법과 차이를 보인다.

공공부조에는 생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및 의료급여 등이 포함된다.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각종 비금전적 원조를 말한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의 범주 안에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도 포함하여 사회보장을 매우 넓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도 주체로 언급하고 있어 사회보장을 매우 넓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 또는 민간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보장의 주체와 범위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1> 사회보장의 주체와 범위

주체 범위	국가(공식, 강제적)	민간(비공식, 자발적)
소득보장(금전)	공공부조, 사회보험	자선, 모금
비 소득보장	사회복지서비스 social welfare service	사회사업 social work

관련 용어의 이해(이 준영 39면)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적 연대와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려는 제도

2. 공공부조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 기본법 제 3조에서,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부조는 빈곤한 자의 생활보호 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으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생활수준 보장의 원칙으로 국가최저(national minimum) 또는 사회최저(social minimum) 원칙이라고 부른다.

3.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적 서비스라고도하며, 사회보험, 공공부조, 관련 사회복지제도와 더불어 사회보장 정책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 제 3조 제 4호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 사업법, 아동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초가 되는 법들이 된다.